

유치원 규칙 신규 대조표

외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

현 행	개 정 안	수정사유
<p>제 4 조 【교육연한】 본 유치원의 수업연한은 만5세에 입학한 유아를 기준으로 1년으로 하되, 만 4세 2년, 만3세 3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.</p>	<p>제 4 조 【교육연한】 본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하되, 만5세는 1년, 만4세는 2년, 만 3세는 3년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, 유치원의 학년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까지로 한다.</p>	<p>- 내용수정</p>
<p>제 6 조 【휴업일】 ① 본 유치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관공서의 공휴일, 국가에서 정한 휴일 2. ~ 4. (생략)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</p>	<p>제 6 조 【휴업일】 ① (현행과 같음) 1. 토요일,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9조의 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(이하 "유치원운영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며,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·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. ③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 ⑤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유치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 할 수 있으며,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.</p>	<p>- 세부조항 추가</p>
<p>제 8 조 【원아정원】 ① 본원의 유아 정원은 20명으로 운영한다. 연령 별 학급편성 및 유아정원은 당해 연도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학급 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. ② (생략) <신 설></p>	<p>제 8 조 【원아정원】 ① ----- 18명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③ 학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결원을 보충한다.</p>	<p>- 내용수정 및 세부조항 추가</p>

<p>제 9 조 【교육과정 및 교육내용】</p> <p>① 본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경기도교육의 기본 가치를 반영한 창의지성교육이 구현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한다.</p> <p>② 경기도 유치원 교육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교육 과정을 편성·운영한다.</p> <p>③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,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도록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한다.</p> <p>④ ~ ⑤ 삭제</p>	<p>제 9 조 【교육과정 및 교육내용】</p> <p>① -----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 있고 창의적인 외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한다.</p> <p>② 교육내용은 유치원의 상황,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수준별 내용간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.</p> <p>③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유아들이 가지는 신체,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하루의 교육 활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배려하며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 및 돌봄 활동을 병행하여 운영한다.</p>	<p>- 내용수정</p>
<p>제 10 조 【교육일수】</p> <p>① 주 5일 수업으로 연간 수업 일수는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,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,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에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10분의 1의 범위에서 교육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제 10 조 【교육일수】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있으며,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- 세부조항 추가</p>
<p>제 11 조 【교육시간】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방과 후의 1일 교육시간은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되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.</p>	<p>제 11 조 【교육시간】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(개별 보호자 동의하에 1시간 이내 조정가능)</p>	<p>- 세부조항 추가</p>
<p>제12조 【수업연구】</p> <p>① 교사는 질 높은 수업이 되도록 부단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교사는 일일교육활동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수업에 임하여야 하며, 본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하여 수업을 운영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12조 【수업운영 방법】</p> <p>① 본원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</p> <p>② 교사는 유치원교육과정의 기본방향, 편성, 운영 방법을 적용하여 수업한다.</p> <p>③ 교사는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수업자료 및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다.</p> <p>④ 교사는 누리과정을 이해하고, 유아중심 놀이중심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.</p> <p>⑤ 유치원장은 감염병 상황으로 전체 등원수업이 곤란한 경우 유아발달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원격수업의 방법을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- 누리과정개정에 따른 내용수정 및 추가</p>

<p>제13조 【수업장학】</p> <p>① 원장과 원감은 교사들의 교수-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수업장학을 실시한다.</p> <p>② 원장과 원감은 교내 순시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조언을 하고, 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13조 【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】</p> <p>① 출석인정기간은 최대 30일로 한다. 단,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“심각·경계”단계인 경우 인정일수는 상이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부나 교육청 인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.</p> <p>② ‘연간 출석 인정 일수’ 및 ‘사전 허가된 기간’ 초과시 ‘미인정 결석’ 처리한다.</p> <p>③ 신청서와 보고서 등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보관한다.</p> <p>④ 체험학습허가불허사항 - 교외체험학습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, 유치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유치원 밖 활동</p> <p>⑤ 체험학습 형태 - 가족동반 여행, 친인척 방문, 답사·견학 활동, 체험활동, 감염병 “심각·경계”단계시 가정학습</p> <p>⑥ 신청서는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실시하며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.</p>	<p>- 내용변경</p>
<p>제15조 【원아평가】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삭 제</p>	<p>제15조 【원아평가】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- 내용삭제</p>
<p>제 19 조 【퇴학】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-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다른 원아의 교육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</p>	<p>제 19 조 【퇴학】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 등으로 퇴학을 요구할 때</p> <p>2. 수업료 징수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석할 때</p> <p>3. ----- -----</p>	<p>- 세부조항 추가</p>
<p>제 24 조 【유치원규칙 개정절차】</p> <p>① 규칙은 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.</p> <p>② 삭 제</p>	<p>제 24 조 【유치원규칙 개정절차】</p> <p>① ----- ----- 이를 확정 . 시행한다.</p>	<p>- 내용삭제</p>